

2023년 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전통기술포럼 제4차 회의록

■ 회의일시 : 2023. 7. 13.(목), 13:00

■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회의실

■ 출석위원 : 김삼기(위원장), 서도식, 신타근, 심연옥,
이은주, 임승택, 장남원

■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

구체적인 실행 내용
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

=

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

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

=

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
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

=

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

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
계획 수립

=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
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


○ 조사단 구성

=

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
이상으로 구성
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
여부 확인 후 확정
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

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

=

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
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

=

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
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
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
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

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
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
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

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↓	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↓	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심의	3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심 의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심의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